

---

#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2026. 4. 10.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목 차

I. 한-UAE CEPA 개요 .....	1
II. 원산지 규정 .....	6
III. 원산지증명 .....	19
IV. 협정관세 적용 .....	27
V. 기타 사항 .....	31
[참고1] 한-UAE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기관발급) .....	34
[참고2] 한-UAE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36
[참고3] 한-UAE CEPA 관세율 구분부호 .....	36

< 일러두기 >

1. 이 지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협정', '법', '영', '규칙', '고시' 라 지칭함
2. 향후 당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이 지침의 개정·추가·변경사항이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수 있음

## I. 한-UAE CEPA 개요

### 1 적용 범위

□ [당사국]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 (대한민국 영역)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 (UAE 영역) UAE 자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UAE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영토, 자국의 자유지역을 포함한 내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그러한 영역과 수역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 [발효] '26. 5. 1.(금)

※ 협정 제1.4조(지리적 적용범위), 제18.4조(발효), 규칙 제2조(정의) 제1호 버목

## 2 상품 양허 현황

- 품목수 기준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달성, 관세철폐 대상 전품목에 대해 최장 10년 내 철폐 합의
  - (품목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 (수입액 기준) 한국 72.3%, UAE 82.0%

《한-UAE CEP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구분	한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전체	11,293	100%	15,492	100%	7,856	100%	4,270	100%
즉시 철폐	8,887	78.7%	1,581	10.2%	3,830	48.8%	809	18.9%
5년 철폐	1,135	10.1%	5	0.0%	953	12.1%	57	1.3%
10년 철폐	422	3.7%	9,617	62.1%	2,385	30.4%	2,635	61.7%
<b>최종 관세철폐율</b>	<b>10,444</b>	<b>92.5%</b>	<b>11,203</b>	<b>72.3%</b>	<b>7,168</b>	<b>91.2%</b>	<b>3,500</b>	<b>82.0%</b>
관세감축	1	0.0%	4,276	27.6%	4	0.1%	0	0.0%
양허제외	848	7.5%	14	0.1%	684	8.71%	769	18.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22 (UAE) HS 2022 / 수입액 기준 : '22년

## 3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
  - (부속서 2-가-1) 한국의 관세양허표
  - (부속서 2-가-2) UAE의 관세양허표

※ 양허표 목적상, 이행 1년차란 발효 연도를 말하며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한-UAE CEP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 단계	UAE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LNG, LPG(프로판, 부탄), 유연탄, 무연탄, 코크스, 에틸렌, 대추야자, 카놀라유, 사료용 조제품, 물, 소주, 소스(겨자, 된장, 춘장 등), 파스타, 코코아조제품, 당류(원당, 포도당, 당밀 등), 식물성 한약재, 철강재용기, 철구조물, 농약, 필름, 금, 니켈스크랩, 알루미늄괴, 동광, 기타금속광물, 백시멘트, 스마트폰부품, 원동기부품, 방사선기기, 승용차(중고), 무게목강관, 기타전자응용기기부품, 프린터, 가열난방기부품, 냉각기, 자동차부품, 원동기, 타일, 집적회로반도체 등	8,887	즉시 철폐	3,830	화물자동차, 특장차, 캠핑카, 기타자동차부품, 초산비닐, 에틸렌중합체필름, 향수, 메이크업제품, 면도용제품, 포병무기, 탄약, 기타무기류부품, 꿀, 버섯, 고추, 밤, 감귤, 포도, 참외, 사과, 배, 딸기, 꽃감, 떡, 김치, 반도체제조용장비, 혼합크릴렌, 레이저프린터, 컴퓨터부품, 컨트롤러, 밸브, 기타항공기부품, 자동제어기, 저압 배전반, 컴퓨터, 광케이블, 스캐너, LCD, 통신선, 계측기부품, 냉방기부품, 기타의료용기기, 인쇄회로, 주석광, 에틸렌중합체필름 등
프로필렌, 부틸렌, 정밀화학원료(스테아르산, 타르타르산, 살시실산 등), 포도주, 인삼음료, 잎담배, 효모, 베이커리제품, 면류(당면, 국수, 냉면 등), 오트밀, 마테, 명란, 참치(생동), 향수, 질소비료, 평판디스플레이, 유선통신장비부품, 레이더, 다이아몬드, 도료, 안전유리, 필기구, 주단강, 주방용품, 거울, 알루미늄박, 의약품, 접착제 등	1,135	5년 철폐	953	발포성 폴리스티렌, 기타정밀화학원료, 피부 연화제, 두발용제품, 위생용품, 트랙터, 차량용의자, 냉장고부품, 로켓발사기, 조미김, 인삼, X선및방사선기기, 언더셔츠, 인쇄용지, 골프용품, 광택제, 승용완구, 속도계, 압연기, 기타광학기, 센서, 나일론사, 편직물(날염), 섬유기계, 화물자동차, 인쇄기계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안경, 커팅공구, 낚시용구 등
원유, 병커씨유, 역청유, NGL, 윤활유, 경유, 기타석유제품, 폴리프로필렌, 낙타유, 대두유, 올리브, 소시지, 참기름, 과일주스, 사료, 기타 낙농품, 오징어, 새우, 칠면조고기, 왁스, 기타 합성수지, 복합비료, 연괴, 포트랜드시멘트, 순면사, 남성셔츠, 알루미늄관, 스포츠용품 등	422	10년 철폐	2,385	에어컨, 냉장고, 냉방기, 승용차(가솔린,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소형화물차, 타이어, 연축전지, 클러치, 완충기, 제동장치, 서스펜션, 저밀도에틸렌, 고밀도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관, 세안용품, 선크림, 라면, 인스턴트 커피, 폴리에스터직물, 기타 철도차부품, 기타건설중장비, 에폭시수지, 영화비닐수지, 중후판, 아연괴, 동관, 타이 어튜브 등
-	10,444	철폐 소계	7,168	-
나프타	1	관세 감축*	4	나프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뱀장어, 넙치, 건조수산물(멸치, 명태, 조기 등),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단판적층재, 옥시디에탄올, 폴리카보네이트, 벤젠, 초산비닐, 아크릴산에틸 등	848	양허 제외	684	페타이어, 석면-석면제품, 전자담배부품, 가죽(양, 돼지 등), 담배, 주류, 돼지고기-조제품, 상아 등
-	11,293	총합계	7,856	-

\* 양축이 상호 5년간 50% 관세 감축

※ 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협정 부속서 2-가(한국·UAE의 관세 양허표), 영 제2조제24항 및 별표17의9

## 4 관세면제 대상 일시수입 물품 등

□ [일시반입 물품] UAE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일시 수입하는 아래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관련 증빙서류, 물품의 상태·용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다만,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규칙 제30조제1항 적용 대상 물품》

- ①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 ②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 포함)
- ③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 포함)
- ④ 상용건품
- ⑤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
- ⑥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협정 제2.15조(상품의 일시 반입), 법 제30조제1항제1호, 규칙 제30조제1항

□ [상업용 견본품 등] 아래에 해당하는 UAE로부터 수입되는 사업용 견본품과 인쇄광고물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관세 면제

- ① (상업용 견본품) 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② (광고인쇄물) 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

※ 협정 제2.17조(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법 제30조제1항제3호, 규칙 제30조제6항

## 5 상품분류 및 관세평가

- [상품분류] 양 당사국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및 그 개정 사항에 합치되어야 하며,
  - HS의 주기적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서 각 당사국의 양허표 현행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 협의함
  -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양허를 손상하지 않고 수행되도록 보장함
  
- [관세평가]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 협정의 관련 규정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양 당사국 간 거래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함

※ 협정 제2.6조(상품 분류 및 양허표 전환) 및 제2.9조(관세평가)

## II. 원산지 규정

### 1 개요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규정
  - 당사국 내에서 ① 완전 획득·생산, ②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생산(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 ③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 한-UAE CEP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22 기준으로 규정

- [원산지절차]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등에 관해 규정
  - (원산지증명) 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② 전자 원산지증명서\* 또는 ③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등을 규정

\* EODES(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로 교환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

\*\* 발효일부터 2년 내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작업반 설치

-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요건 및 의무, 인증수출자 DB 구축·등록 등 수출당사국 권한 있는 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
- (특혜 적용) 유효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신청,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 사후신청 가능
- (검증)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 요청(간접), 수입당사국의 수출자·생산자 방문 검증(직접)

### 2 정의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 (양식)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
- (세번변경) HS의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수준에서의 변경
- (권한 있는 당국) (한국) 재정경제부 또는 관세청, (UAE) 경제부
- (탁송물)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생산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생산품
- (관세가격) 관세평가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 (상품) 재료와 생산품을 포함한 모든 교역 물품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함. 이러한 기준은 세부 기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폭넓은 지침을 포함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HS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그 일반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를 말함
- (제조)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
- (재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품 또는 부품

-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
- (원산지 상품·재료)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 (생산품) 그 생산품이 추후 다른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양식, 덧사냥, 수렵, 추출 또는 제조에 의하여 획득된 것
- (생산)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양식,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함

※ 협정 제3.1조(정의)

### 3 일반 규정

- [원산지 상품]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 원산지 상품의 종류 》

- ① [완전생산(WO)] 제3.3조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 ②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는 경우, 다만, 제3.4조에 따라 당사국 영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
- ③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상기 규정된 각각의 경우, 상품은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협정 제3.2조(원산지 상품)

□ [완전생산 상품] 다음 상품은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생산으로 간주

《 완전생산 상품 》

- ①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수집 또는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②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③ ②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생산품
- ④ 당사국의 토양, 하층토,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생산품 또는 천연 자원
- ⑤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낚시, 수집, 포획,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생산품
- ⑥ 당사국에 등록, 등기, 기재 또는 인가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해 밖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
- ⑦ 당사국에 등록, 등기, 기재 또는 인가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⑦에서 언급된 생산품만으로 만들어진 생산품
- ⑧ 양 당사국의 해저, 해상 또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하층토에서 잡히거나 추출된 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 외의 생산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⑨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 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사용, 소비 또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는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 ⑪ 모든 생산단계에서, ①부터 ⑩까지에 언급된 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획득된 상품

※ 협정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다음의 규칙에 따라 원산지 상품 인정

○ (일반규칙) 상품이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그 상품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여겨지고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하거나
- 인정가치포함비율(QVC)이 본선인도가격(FOB)의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개별규칙) 일반규칙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해당 목록에 기술된 특정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인정가치포함비율 계산 방법 》

- 인정가치포함비율(QVC):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제외. EXW가격을 사용한 QVC는 FOB가격을 사용한 QVC보다 5퍼센트 더 낮음
-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가격(EXW)}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가격(EXW)}} \times 100$$

《 인정가치포함비율 계산 시 사용되는 용어 》

- 인정가치포함비율(QVC): 백분율로 표시된 상품의 인정가치포함비율
- 본선인도가격(FOB Price):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 공장도가격(Ex-Works Price):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
- 비원산지재료가치(VNM):
  - ① (수입된 경우)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불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

- ② (당사국에서 획득된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공급자의 창고에서 생산자의 위치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어떠한 비용도 포함하지 않음
- ③ (자가생산된 재료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그 재료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그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추가할 수 있음

※ 협정 제3.4조(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및 별표 15의10

## 4 특례 규정

- [중간재]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음

※ 협정 제3.5조(중간재)

- [누적]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가공 또는 생산에 완성품의 재료로 사용된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그 완성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
  - 다만,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제3.8조에 나열된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이상의 가공을 거쳐야 누적 적용 가능

※ 협정 제3.6조(누적)

- [허용치 (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상품이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허용치 인정 기준 》

- ① **섬유 및 의류(제50류 ~ 제63류)를 제외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가격(Ex-Works)의 15% 이하**
- ② **섬유 및 의류(제50류 ~ 제63류)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가치가 그 상품의 중량 또는 공장도가격(Ex-Works)의 10% 이하**
- ※ ① 및 ②가 적용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 제3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①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되는 QVC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는 포함됨

※ 협정 제3.7조(허용치)

-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제3.4조(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의 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불인정

《 협정 제3.8조에 따른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

- ① 동물의 도살
- ② 건조, 냉동, 환기, 냉장 및 이와 유사한 공정과 같이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생산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 ③ 감별, 세탁, 절단, 쪄내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연마, 단순 분쇄, 얇게 자르기
- ④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를 포함한 세척
- ⑤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⑥ 시험 또는 측정
- ⑦ 병, 캔, 플라스틱, 가방, 케이스, 상자로의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포장 공정
- ⑧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 ⑨ 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생산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생산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⑩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⑪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 ⑫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⑬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재포장 공정, 그리고 탁송물의 해체 및 조립
- ⑭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⑮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⑯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⑰ ①부터 ⑯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 이 표에 언급된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말함

-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말하며,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음

\*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 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을 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화학반응으로 인정되지 않음

-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용제(용매물을 포함)의 제거,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협정 제3.8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 [간접재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생산에 사용된 다음의 재료는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됨

**《 간접재료로 인정 가능한 물품 》**

- ① 에너지 및 연료
- ② 설비 및 장비
- ③ 기계 및 공구
- ④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고,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그 밖의 재료 또는 상품

**※ 협정 제3.9조(간접재료)**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는 상품의 일부로 간주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에 반영

《 원산지 지위 결정 시 부속품 등의 적용 기준 》

- ① (세번변경기준 등 적용 시) 부속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함
  - ※ 다만, 부속품 등이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급되지 않아야 하며,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 수준이어야 함
- ② (인정가치포함비율 적용 시) 해당 부속품 등의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협정 제3.10조(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포장재료 및 용기의 취급]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 (소매 포장용) 아래에 기준에 따라 적용

《 소매 포장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 결정 방법 》

- ① (세번변경기준 등 적용 시) HS품목분류의 해석에 관한 통칙5에 따라 해당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상품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시 고려되지 않음
- ②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해당 상품과 함께 일체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함

- (운송·수송용)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음

※ 협정 제3.11조(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및 제3.13조(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 [자격 단위]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격 단위는 HS품목번호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여겨지는 특정 생산품임
  -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생산품이 단일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전체가 자격 단위를 구성
  - 탁송물이 동일한 호에 분류된 여러 개의 동일한 생산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생산품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협정 제3.12조(자격단위)

-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에 관한 결정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따라 결정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

- ①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를 통해 결정
- ②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거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결정
- ③ 다만, ②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당사국의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참고) 다른 FTA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 ① (개별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

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

⑤ ① ~ ④ 외에 상품이 생산된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협정 제3.14조(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 [상품의 세트] HS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규정에 따른 세트는 아래에 기준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결정

《 상품의 세트의 원산지 결정 방법 》

- ①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②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공장도가격(EXW)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협정 제3.15조(상품의 세트)

**5** **영역 원칙**

□ [원칙] 협정 제3.2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관련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예외 인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으로 재반입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재반입물품의 원산지인정 기준 》

- ①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 ② 재반입되는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 [역외가공(비당사국)] 협정 제3.2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고 그 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되는 재료에 대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당사국 밖에서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 역외가공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인정 기준 》

- 가.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고 그 이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되는 그 재료가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제3.8조에 언급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어야 함. 그리고
- 나.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함
- 1) 재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그리고
  - 2) 당사국 밖에서 획득된 “총 부가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생산품의 공장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최종 생산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인정가치포함비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된 총 부가가치는 최종 생산품에 대하여 기재된 인정가치포함비율 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라. 제3.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생산품 또는 제3.7조의 일반 허용치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충분히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생산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마. 역외가공과 관련된 사실 정보는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바. 나의 2)에서 “총 부가가치”는 수출 당사국 밖에서 결합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함
- 사. 수출 당사국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침에 따른 역내 및 역외 가공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아.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 상품의 처리에 대해 논의를 개시하고 논의 개시부터 3년 내 논의를 마침

※ 협정 제3.16조(영역 원칙)

## 6 통과 및 환적

- [원칙]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유지
- [예외 인정] 원산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 비당사국을 통하여 통과되거나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인정

### 《통과 및 환적 예외 인정 요건》

- ① 그 상품이 통과 또는 보관되는 비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을 것
- ②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수입 당사국의 특정 국내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라벨의 추가 또는 부착, 통과 또는 보관되는 비당사국들에서 세관의 감독하에 수행되는 화물의 분리,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공정 외에 그 비당사국에서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함
- ③ 수입자는 요청에 따라 상품이 통과 또는 보관되는 국가들에서 세관의 감독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공해야 함

※ 협정 제3.17조(통과 및 환적)

### Ⅲ. 원산지증명

#### 1 개요

- [증명방식]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는 다음의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혜택을 받으며, 원산지증명은 영어로 작성

##### 《한-UAE CEPA 원산지증명 방식》

- ① 발급기관이 발급한 종이 또는 전자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 ②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은 해당 제도를 이행중인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합의. UAE의 이행시점은 현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시기에 추후 맞춰 별도 공지 예정
- ③ EODES로 교환되는 기관발급 전자원산지증명서(EODES 도입 후 향후 검토)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년간 유효
- [적용시점] 협정 발효일부터 발급·작성 가능

※ 협정 제3.19조(원산지 증명)

####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발급기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발급
  - ※ UAE의 경우 대외무역부(The Ministry of Foreign Trade)에서 발급 (규칙 제8조제14항제1호에 따른 UAE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변경됨)

□ [발급절차] 수출물품의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5 근무일(선적일 미포함) 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 》

- ①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④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별 또는 UAE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소급발급]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5 근무일 (선적일 미포함)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소급발급 문구 기재  
“ISSUED RETROACTIVELY”

《(참고) 협정별 소급발급 기준》

대상 협정	소급발급 기준
아세안, 베트남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중국, 이스라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불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본 발급신청 가능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과 동일한 발급번호, 발급일자와 “CERTIFIED TRUE COPY” 문구 기재
-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발급기관은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음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

- ①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고,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②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Replacement” 문구를 기재하고 이전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추가로 기재함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시 발급기관 제출서류》

재발급	정정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①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신청서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발급을 받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③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협정 제3.20조(원산지 증명서) 및 부속서 3-나, 규칙 제7조·제8조·제10조, 고시 제26조 ~ 제35조

### 3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

- [원산지증명서 서식] 협정 부속서 3-나(규칙 별지 제24호의13(참고1))
-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방법에 따라 기재

#### 《 원산지증명서 주요 항목 기재 방법 》

-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 기재
- (제2란) 물품의 생산자(이름 및 국가), 생산가가 수출자의 경우 [1번란]과 동일하게 기재. 이 정보를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zed body upon request"로 기재 가능
- (제3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 기재
- (제4란) 운송수단 및 경로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 (제5란) 제3자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체크(✓) 표시하고 제3자 송장발행 회사명 및 주소를 기재. 다만, 제3자가 발행한 송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제12란에는 제1란의 상품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
- (제6란) 다음의 추가 정보를 기재

제6란 기재	비고
• ISSUED RETROACTIVELY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5근무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제3.20조제4항에 따라 소급하여 발급된 경우
• CERTIFIED TRUE COPY	협정 제3.20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 Replacement	협정 제3.20조제8항에 따라 대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정정발급)하는 경우(이전 원산지증명서의 번호 기재 필요)
• Outwards Processing	협정 제3.16조에 따라 역외 가공한 경우
• Other information	그 밖에 필요한 경우

- (제7란)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 번호 기재

- (제8란) 해당 물품의 품명과 포장의 화인, 숫자, 수량 및 종류 기재
  -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고, 송장의 품명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
- (제9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 당사국의 HS6 단위 코드를 기재
- (제10란) 물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

원산지 기준	
가. 협정 제3.3조를 충족하는,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WO"
나. 협정 제3.4조를 충족하는 물품	
세번변경	"CTC"
인정가치포함비율	"QVC"
특정 제조 또는 가공	"SO"
결합 기준	"COMBO"
다. 협정 제3.2조 다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PE"

- (제11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 기재. 다른 관례가 있는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 또는 개수)를 기재할 수 있음
- (제12란) 송장 번호 및 날짜를 기재
- (제13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 장소 및 서명일을 삽입
- (제14란) 권한 있는 당국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적고 관인을 찍음

**※ 협정 부속서 3-나(원산지 증명서), 규칙 제15조제23항 및 별지 제24호의 13 서식**

## 4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 [작성권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한 원산지인증수출자 》

-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②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UAE와의 협정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

□ [원산지신고서 서식] 관련 원산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한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 서류에 협정 부속서 3-다에 제시된 신고 문안을 기재하여 작성·서명

○ (송품장 등 상업서류 기재사항)

《 협정 부속서 3-다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b>Origin Declaration</b>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ty authorization No..... <sup>1)</sup>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sup>2)</sup> preferential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of the Korea-UAE CEPA and that the origin criteria met is ..... <sup>3)</sup>
_____ <sup>4)</sup> Place and Date	_____ <sup>5)</sup> Signature and seal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거나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li> <li>○ 수기로 작성될 경우에는 내구성이 있는 잉크를 사용하여 판독 가능한 정자로 작성합니다.</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li> <li>2) 생산품의 원산지(the Republic of Korea)를 적습니다.</li> <li>3) 생산품의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li> </o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left;">원산지 기준</th> </tr> <tr> <td style="padding: 5px;">가. 협정 제3.3조를 충족하는,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WO"</td> </tr> <tr> <td style="padding: 5px;">나. 협정 제3.4조를 충족하는 물품</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세번변경</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CTC"</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인정가치포함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QVC"</td> </tr> <tr> <td style="padding: 5px;">    특정 제조 또는 가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SO"</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결합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COMBO"</td> </tr> <tr> <td style="padding: 5px;">다. 협정 제3.2조 다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PE"</td> </tr> </table>		원산지 기준		가. 협정 제3.3조를 충족하는,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WO"	나. 협정 제3.4조를 충족하는 물품		세번변경	"CTC"	인정가치포함비율	"QVC"	특정 제조 또는 가공	"SO"	결합 기준	"COMBO"	다. 협정 제3.2조 다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PE"
원산지 기준																		
가. 협정 제3.3조를 충족하는,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WO"																	
나. 협정 제3.4조를 충족하는 물품																		
세번변경	"CTC"																	
인정가치포함비율	"QVC"																	
특정 제조 또는 가공	"SO"																	
결합 기준	"COMBO"																	
다. 협정 제3.2조 다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P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li> <li>5) 수출자가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추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합니다.</li> <li>6) 제3자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자 송장"이라 기재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 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발행된 송장 등의 상업서류에는 작성될 수 없습니다.</li> </ol>																	

※ 협정 제3.22조(원산지 신고) 및 부속서 3-다

## 5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DB] 협정 제3.2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인증수출자 정보\*를 UAE 관세 당국에서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증수출자의 법적 상호 및 주소,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발급일 및 만료일, 최소 HS2단위 수준의 인증 적용대상 상품목록(HS 코드만) 등

-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 제도 운영

《 한-UAE CEP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정 신청 》

- 가. (신청자)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나. (신청시작) **2026. 4. 13.(월) ~**
  - 다. (신청방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신청·접수
  - 라. (제출서류)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
    - 인증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등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 인증수출자 신청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FTA포털\* 또는 아래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 //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인증신청 접수)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접수처 》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물류과	032-722-4122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7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4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74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3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6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46

- (인증 효력 및 인증서 교부) 협정 발효(5.1) 이후 인증 효력이 발생하며 인증서 발급이 가능

※ 법 제12조, 영 제7조, 시행규칙 제18조

## IV. 협정관세 적용

### 1 협정관세 적용 시점

- [적용시점] 협정 발효시점('26. 5. 1. 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
- [경과규정] 아래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으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 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은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음

#### 《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 》

협정 발효일 당시에

- ① 운송 중인 물품이거나,
- ② 세관의 통제하에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인 물품이거나,
-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 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 (유의사항)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① 협정 발효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와 ② 협정 제17조에 규정에 따른 직접운송 입증서류 제출

※ 협정 제3.20조(원산지 증명서) 제5항

## 2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시기

- [원칙]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 (증빙서류) 협정 제3.1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수입 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 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함
- [예외: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수입·납세 신고정정신청서, ③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에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 다만,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도착일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

※ 협정 제3.23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및 제3.24조(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법 제8조 및 제9조

### 3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방법

- [관세율 구분부호]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한-UAE CEPA의 관세율 구분부호(“참고3”)와 협정관세율을 기재
-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아래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을 인정

####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 ① UAE 대외무역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 ②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 ※ UAE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만 가능. 향후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시 별도 공지
  -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은 해당 제도를 이미 이행중인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합의. UAE의 이행 시점은 현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별도 공지

-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형태》

- ① 종이 원본.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 《(참고)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양식》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협정 제3.23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

## 4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수입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

### 《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제외 대상 》

- ①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 ② 원산지증명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협정 제3.23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제3항, 법 제8조제2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 5 원산지증명서의 하자 처리

-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체 원산지증명서(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요구 대상 》

- ① 원산지증명서가 판독 불가하거나 표면에 결함이 있는 경우
- ② 원산지증명서가 부속서 3-나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③ 원산지증명서와 서면 신고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 협정 제3.23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제6항, 규칙 제21조제5항

## V. 기타 사항

### 1 원산지검증

-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을 위한 원산지검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

####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방법》

- ① [수입자 검증]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등 서면조사
- ② [간접검증]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UAE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 요청. 다만, UAE 관세당국의 원산지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 제3.26조제6항에 따라 다음의 ③ 또는 ④의 방법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③ [추가 정보 서면요청] UAE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
- ④ [수출자·생산자 현지조사] UAE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대상으로 현지조사. 이 경우 현지조사의 결과통지는 현지조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방법》

- ① [간접검증]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UAE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과 통지  
- 다만, UAE 관세당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공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UAE 관세당국은 협정 제3.26조제6항에 따라 다음의 ② 또는 ③의 방법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② [추가 정보 서면요청]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해당 정보 제공
- ③ [수출자·생산자 현지조사]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검증 방문. 이 경우 UAE 관세당국은 검증 방문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통지

※ 협정 제3.26조(검증), 법 제17조 ~ 제19조, 영 제11조~13조, 제15조 및 제16조, 규칙 제22조~제25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세관장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① 협정관세 적용대상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② 상품의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협정 제3장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③ 수입국 관세당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 ④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관세당국이 제3.26조에 따른 검증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협정 제3.25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법 제35조, 영 제44조

## 3 제3자 송장

-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음

- 다만, 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발행된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대해 제공되지 않음
- 제3자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에 다음과 같이 제3자 송장의 정보를 표시함

《 제3자 송장 정보 표시 방법 》

- ① (기관증명) "제3자 송장"이라 기재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 같은 정보를 부속서 3-나(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적절한 란에 표시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제5란) 참조[22페이지]
- ②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3자 송장" 이라 기재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 같은 정보를 협정 제3.22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표시

※ 협정 제3.27조(제3자 송장)

**참고1**

**한-UAE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기관발급)**

[별지 제24호의13서식] <신설 2026. 1. 6.>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b>Certificate of Origin</b>						[QR Code or Website]
1. Exporter'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u><b>KOREA – UNITED ARAB EMIRATES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b></u>  <u><b>CERTIFICATE OF ORIGIN</b></u>  Issued in ..... (Country)  See Overleaf Notes			
2. Producer's Name, Address, Country						
3. Importer's Name,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input type="checkbox"/> Third party invoice (Name and Address)			
6. Remarks						
7. Item number	8. Description of Goods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9. HS Code	10. Origin Criteria	11. Gross Weight, Quantity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he/she has read the instructions for filling out this certificate and that the goods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Date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Signature</div>			14. Certification  We hereby cert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and that i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Signature and Stamp</div>  .....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ompetent Authority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물품의 생산자(이름 및 국가)를 적습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같은 경우, 제1란과 동일한 내용을 적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정보를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zed body upon request” 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제3란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를 알고 있는 경우 운송수단 및 경로를 적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및 선적항과 하역항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제3자가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Third party invoice” 란에 “√” 표시를 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이름 및 주소를 적습니다.  
 \* 제3자가 발행한 송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이용가능 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제12란에 적고 다른 송장을 발행할 회사 또는 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제5란에 적습니다. 그러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당사국으로의 거래를 확인하는 송장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제6란에는 수출국이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sued retrospectively” :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5근무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제3.20조제4항에 따라 소급하여 발급된 경우  
 “CERTIFIED TRUE COPY” : 협정 제3.20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Replacement” : 협정 제3.20조제8항에 따라 대체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경우  
 (이전 원산지증명서의 번호 기재 필요)  
 “Outwards Processing” : 협정 제3.16조에 따라 역외 가공한 경우  
 “Other information”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7. 제7란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 번호를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고, 송장의 품명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포장의 화인, 숫자, 수량 및 종류도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 당사국의 HS 코드를 적습니다. HS 코드가 6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첫 6단위만 고려합니다.
10. 제10란에는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출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수출자는 물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기준	
가. 협정 제3.3조를 충족하는,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WO”
나. 협정 제3.4조를 충족하는 물품	
세번변경	“CTC”
인정가치포함비율	“QVC”
특정 제조 또는 가공	“SO”
결합 기준	“COMBO”
다. 협정 제3.2조 다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PE”

11. 제11란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다른 관례가 있는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 또는 개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12. 제12란에는 송장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13. 제13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장소 및 서명일을 삽입합니다.
14. 제14란에는 권한 있는 당국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적고 관인을 찍습니다.

**참고2**

**한-UAE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인증수출자 자율발급)**

**Annex 3-C**  
**Origin Declaration Pursuant to Article 3.22**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ty authorization No.....<sup>1)</sup>)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up>2)</sup> preferential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of the Korea-UAE CEPA and that the origin criteria met is .....<sup>3)</sup>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참고3**

**한-UAE CEPA 관세율 구분부호**

협 정	관세율 구분부호	내 용
한-UAE CEPA	FAE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AE2 FAE3 FAE4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AE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AE2부터 FAE4까지 순차 적용

1) The authorization number of the approved exporter given by the concerned competent authority must be entered in this space.  
2) Origin of products to be indicated.  
3) Origin criteria of products to be indicated.